
민간주도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소통 가이드라인

2024. 4.

민간주도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소통 가이드라인

1. 소통 가이드라인 개요

본 소통 가이드라인은 민간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자가 사업 관련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해상풍력 관련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증폭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에서 해상풍력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절차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주민의견 수렴 관련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부 주민의견 가이드라인은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의 전과정을 보면 공정 단계별로 이해관계자 소통과 관련해서 대응해야 하는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해상풍력 공정 단계를 사업기획 단계, 실시설계 단계, 공사 및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이해관계자 소통 관련 대응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해설서를 추가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가이드라인의 일차적인 수요자는 개발자이고, 해상풍력 허가권자인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담당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이해관계자 소통 가이드라인

1) 사업기획 단계

- 우선 사업기획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안)이 논의되고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사업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사업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지만,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는 이해당자가 분석을 위한 사전조사, 주민 참여형 사업 계획을 위한 실행 가능한 상생방안 조사, 합의형성 과정에 대한 방법론 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생방안의 종류 및 내용을 어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방안의 개발이다. 상생방안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내용이므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준비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여야 한다.
- 사업성이 확인된 지역의 경우 본격적인 이해관계자 분석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공간적 특성을 갖는 부분(경관, 조류 등)과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계층(어선어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주민의 범위를 영향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지가 해상이고, 이곳에서 어선 어업을 하는 어민도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방법으로 주민을 설정하면 어선어업에 종사하지만 영향 범위 밖에 거주하는 어민은 주민으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다층적인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초,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파악된 이해관계자간 역할관계, 사업에 대한 인식, 쟁점사항 등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고, 사전이라고 함은 발전 사업 신청 이전에 가급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구성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달리 말하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못지 않게 운영적 측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적절하게 운영하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자 협의체 관련 중요한 설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현 단계에서 완료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확인된 이해관계자 중 참여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양한 어업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의 선임이 중요하다. 이는 해상풍력은 공간적 영향과 사업으로 인한 영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계층이 존재하므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촉 위원은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흔히 제기되는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주체를 선정하여 운영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인기관이 운영의 주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환경영향은 먼저 영향을 회피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회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소화 방안을 집행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상쇄(offset)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상생방안의 방향성을 현 단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협의체 구성 시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는 지역 상생방안,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이익공유 방안,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등을 도출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2) 실시설계 단계

- 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 번째, 협의체 구성의 목적을 분명히 천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협의체는 주민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아닌 수립된 계획을 원만하게 실행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결과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 협의체 기능 및 협의내용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기능에는 논의 범위, 기능,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해관계자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한 위상을 명확히 정립하여야 하며 만일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행촉구 방안, 이의제기 방안에 대

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상생방안, 주민 이익공유 등 지역사회에 제공될 수 있는 편익은 기초지자체 차원이 아닌 해당 지역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광역적인 경제적 편익보다는 지역사회에 향유하는 경제적 편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세 번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기본원칙으로 포용성,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천명함으로써 협의체에 참가하는 구성원의 책임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합의한 내용을 지킬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본원칙으로 천명하는 것이 사소한 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나름 영향력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대표 등의 기본 책무를 명확히 명시한다면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은 구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네 번째, 정보공개 범위의 선정을 통해 정보의 낙수효과가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협의체는 비밀주의로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만, 비밀주의로 진행되는 협의회는 모든 주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주체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협의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해당 내용은 오프라인으로도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 공고문을 부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디서 어떻게 정보 접근이 가능한지 공지하거나,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지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각 주민 계층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위원은 협의체 논의 내용을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보 배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 다섯 번째,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외 공익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은 정보 및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개발 관련 지식 및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 관련 전문적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익위원을 선임하여 주민이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협의회 위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갈등관리 및 중재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해당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문가 명단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위원은 민, 관이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전문위원회,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협의체 본 회의에서는 다양한 안전에 대한 의결하고, 하위 분과에서 의견에 대한 조율, 대안 산정 등 실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환경조사 위원회에서는 공사 및 운영 시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상생 위원회에서는 개인 혹은 지역사회 발전기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소통위원회에서는 민원에 대한 대응 및 처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실시기관의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는 가용예산 규모, 인력 등 현실적인 운영역량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시기관이 광역지자체인 경우와 기초지자체인 경우를 구분하여 협의회 운영규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방안 마련과 함께 영향예측 중간 검증에 대한 사안도 현 단계에서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통해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에 대한 상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전문성과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공익위원의 활동이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환경영향 이슈는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분야로서, 찬반 양쪽의 전문가들에게 전체 위원이 충분한 이해, 역량배양을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한 이후에 그 결과와 방향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결, 사후 지속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스코핑 결정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비록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경을 위한 절차는 사전에 합의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체적인 상생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개인적인 측면과 지역사회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측면은 주민이 직접 지분을 투자하여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이 가장 흔히 활용되는 방안이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힘들 수 있어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 편입되는 발전기금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용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직접보상금의 경우 마을에서 자체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기초지자체를 통해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지원금의 형태, 용처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상생방안은 외부 전문기관 혹은 운영사무국을 통해 마련되어야 하며, 각 상생방안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원 마련 방안, 실행 주체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협의회 내에서 의결 혹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생방안 역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변경을 위한 절차는 사전에 합의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사 및 운영 단계

- 본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후 수행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혹은 환경영향 모니터링의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전에 합의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사지점 역시 현황조사, 영향예측 지점과 중첩해서 예측치와 실측치 간 비교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규 지점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지점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왜 신규 측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및 해당 이유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분과위원회 중 환경영향 모니터링 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운영방법이라 판

단된다.

- 이와 함께 사후환경영향조사 혹은 환경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협의체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는 경우 주민대표가 협의체에 참여하여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민대표가 결과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한 결과를 다시 그들이 대표하는 일반주민에게 공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 모니터링 결과는 단순한 수치 및 영상 공개가 아닌 수치 및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용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중간 조력자가 필요하다. 중간 조력자가 워크숍이나 소규모 간담회에 주민을 대변하여 질문하고 결과를 이해하여 주민에게 소통할 수 있다면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은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간 조력자를 고용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개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사고 및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태풍 등 예기치 못해 발생 가능한 공사 및 운영 시 사고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각 가능성 별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가 환경영향평가 시 영향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 사전에 합의된 조사 및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합의된 조사 및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주민들은 공사 및 운영 시 별도의 환경영향감시단을 구성하여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비용도 마을 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쟁점사항

1) 사업기획 단계

-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해당 수역의 이용에 지장으로 인한 영향은 광역적이므로 영향에 대한 실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입지 가능지역에 대한 정보의 공개 시기 및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 계층의 대표성 및 의사결정 방법을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성은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입장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해상풍력 개발 관련 입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입장과 쟁점별로 그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갈등 중재자 후보군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실시설계 단계

- 상생방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편익과 지역에 제공되는 편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개인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사업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보상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개인 편익은 지분참여 방식이 가능하다.
- 지역에 제공되는 편익은 영향을 받는 다양한 계층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핵심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해상풍력 단지를 양식장으로 활용하거나, 해상 풍력 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3) 운영 및 공사 단계

- 주민이 공사 및 운영 시 환경모니터링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역량배양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특히 주민과 사업자 간 정보 및 전문성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주민의 역량배양은 사업 관련 주민수용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 주민 혹은 주민이 선임한 전문가가 사후환경모니터링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안은 전문성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방법이 어려운 경우 공중오픈하우스, 소통형 환경모니터링 워크숍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감시단을 구성하여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5. 방법론 관련 해설서

1)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모두 수립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커뮤니티 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아래의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과정(예시: 타운홀 미팅 등 소통 기능 최대화)
 - 이익공유를 위한 마을법인 설립 추진
 - 지역사회 기금 활용방안 마련(사업자 혹은 기초지자체가 제공하는 기금으로 용처가 정해져 있음)
 - 추가적인 지역사회 기금조성 방안 마련
 - 조성된 기금으로 마을법인 활동 개시
 - 커뮤니티 과제 추진 계획 확정
 - 이익공유 및 위험 관리 실시

- 커뮤니티 과제 추진 계획 수립 시 중요한 내용은 이해관계자 참여 독려이고, 이해관계자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풍력개발 단계별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한 지점에 대한 인식이다.
 - 입지개발 시: 이해관계자 분석
 - 커뮤니티 과제 추진 계획 수립 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의 설계
 - 환경영향평가 및 허가과정: 허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마련
 -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 감시, 이익공유 결과 점검, 상시 협의체계 유지
- 이해관계자 분석은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에 대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향지역의 거주인의 인구학적 구성 조사
 - 설문조사, 탐문조사 등 탐색적 조사방법을 통해 사업관련 입장 및 쟁점사항 조사
 -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주민의 그룹화
 - 추가적인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확인된 그룹 간 역학관계 조사
 - 단순히 사업의 찬반을 넘어서 입장에 대한 이해에 대한 조사 필요
 -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지도 제작 등 결과 공유

2) 상생방안 종류 및 내용

- 지원, 보상, 이익공유의 구분이 필요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보상**은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것임
 - 「수산업법」 제34조, 시행령 별표4의2 에 의한 **보상**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과 어업보상의 손실액 산출방법과 산출기준 등에 관한 것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별표 4의2에 의한 **지원**은 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 및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방식에 관한 것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7조에 의한 **지원**은 토지소유자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2항에 의한 **지원·이익공유**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임
- 주민참여형 개발과 이익공유와의 구별이 필요함
 - 이익공유: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금적적 이익의 일부를 배당, 임대료, 전기료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
 - 주민참여형 개발: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금전적으로 참여하여 이윤의 일부를 나누는 개발(적극적 이익공유)
 - 재생에너지 개발에 의해 직간접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사업이익을 명확히하고 최대한 화하면서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이익공유라고 볼 수 있음.

이익공유의 목표는 폭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투자의 이익을 늘리고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보장하는 것임

- 이에 반해 주민 참여형은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개발 방식임(주민을 사업자로 편입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 영국 사례: 지역사회 펀드

- 영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적정규모의 지역사회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의 이익공유 제도로서 해당 기금은 지역사회 개발 및 복지, 문화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덜 가시적이지만 정당한 영향을 받는 더 넓은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기금을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용하고 기금 집행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고 있음.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홍보 및 의견수렴, 공모사업 신청서 검토 및 평가, 청구 및 보고요건, 거버넌스 및 실사 등을 확인함